

##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
번호

155

제출년월일 : 1993. 3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### 1. 제 안 사 유

-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률이 별도 제정되어 이법에 의거 조례를 운영하게 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 주 요 골 자

-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근거조항 개정 (안 제1조 참조)

폐기물관리법 제35조"를 "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"로 개정

### 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규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첨
-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"를 "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

제34조제1항의" 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 대 조 문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| 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폐기물관리법</u>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오수,분뇨 및</u> |   |   |
|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       |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 제35조 제1항의        |   |   |
|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          | 규정-----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         |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
|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 | ----- 한다.                    |   |   |